성주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성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단지 내 법정리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법정리 경계 조정지역 : 성주읍 학산·금산·예산리 일원

○ 단지내 조정(변경)면적

■ **학산리 : 당초 245,785㎡ → 조정 185,707㎡(감60,078㎡)**
-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편입 : 14,304㎡(15필지)
- 다른 지역으로 이동 : 74,382㎡(58필지)

■ **금산리 : 당초 389,366㎡ → 조정 408,084㎡(증18,718㎡)**
-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편입 : 33,452㎡(31필지)
- 다른 지역으로 이동 : 14,734㎡(17필지)

■ **예산리 : 당초 216,514㎡ → 조정 257,874㎡(증41,360㎡)**
-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편입 : 48,473㎡(36필지)
- 다른 지역으로 이동 : 7,113㎡(7필지)

4. 관련법률

○『지방자치법』 제4조의2
○「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」 제9조의2
○「성주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」 제2조

5. 검토의견

▢ 본 개정조례안은

○ 성주읍 학산·금산·예산리 일원에 시행되고 있는 성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단계에 있어, 단지내 법정리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,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

○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합당함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감사 합니다.